

제 목 : 한국은행,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 지원체계 구축

- **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(은행)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*하여 내년 1.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」을 의결**

* 한은법 제65조(긴급여신)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담보로 대출채권을 활용 가능

- 한국은행은 현재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(자금조정대출)에 더해 **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*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**을 통해 금융기관에 **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**를 마련

* 금융기관이 자금조달·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, 전산 장애 등으로 자금지급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경우(한은법 제65조)

- 이를 통해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**유동성 안전판**을 강화함으로써 **금융시스템 안정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**대출채권을 담보로** 활용함으로써 유사시 **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**을 마련하는 한편, **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**하고 **시장불안을 예방**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

※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「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」 참조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 팀장 김범서, 과장 김경호·문선경(Tel 02-759-4480, 4472, 4576)

공보관 : Tel 02-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

I 도입 배경

-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*에 따라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

* 2023년 미국 SVB에서는 SNS 등을 통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%가 인출되었고, SVB 영국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30%의 예금이 이탈

- 한국은행은 2023.7월중 상시대출제도(자금조정대출)의 적격 시장성 증권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금번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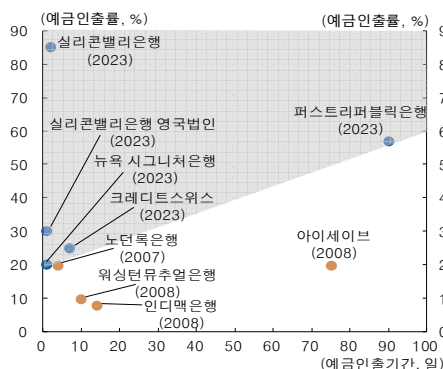
-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사전 수취(Pre-positioning)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*

* 미 연준, ECB, 영란은행,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, BIS 등 국제기구도 고강도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출채권 담보 등의 활용도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평가

- 현행 한은법 하*에서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」(<참고> 참조)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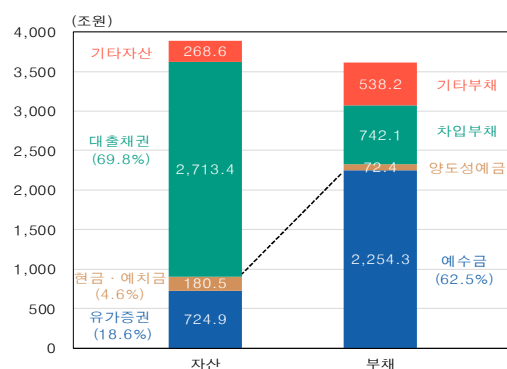
* 한은법 제65조(긴급여신)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담보로 대출채권을 활용 가능

유동성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예금인출속도¹⁾



주: 1) 주황색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시, 파란색 점은 2023년 은행위기시 사례
자료: BIS(2024)

국내은행 대차대조표¹⁾



주: 1) () 안은 비중
자료: 국내은행 업무보고서(2025.6월말, 19개은행 합산 기준)

Ⅱ 주요 내용

- **[대출채권 사전수취]** 필요시 신속한 담보 활용을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제공한 대출채권 정보에 대해 적격요건 심사, 담보인정가액 산정 등을 통해 **담보활용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***

* 대출채권은 시장성증권과 달리 담보 활용을 위한 정보 수취, 적격성 심사, 담보인정비율 산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하는 것이 중요

- **[긴급여신 지원]**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**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지원**

* 금융기관이 자금조달·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,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경우(한은법 제65조)

- 긴급여신의 **대상기관, 대출한도, 대출금리, 대출기간** 등 구체적인 사항은 **금통위 의결로 결정**

- **[대출채권 담보 범위]** 우선 **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**(주택담보대출 제외) 및 **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**(BBB-등급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.0% 이내)한 **대출채권으로 한정***하고 이후 **점차 넓혀나갈 계획**

* 상호연계 위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자(대주주·자회사·계열회사)에 대한 대출채권은 제외하며,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선순위대출만을 인정

- **[모의훈련]** 필요시 **모의훈련**을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동 제도에 대해 **숙지함으로써 준비태세***(operational readiness)를 **갖출 예정**

* 2023.3월 뱅크런 발생 시 SVB는 미 연준 재할인 창구에 대규모 자금을 요청 하였으나 담보물 평가, 테스트 거래 등 실무 준비가 부족하여 적시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함

Ⅲ 기대효과

- **[유동성 공급기반 강화]**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*하는 **대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**

* 은행의 총자산중 비중(2025.6월말 기준): 대출채권 69.8%, 시장성증권 18.6%

- **[금융기관 비상자금조달 수단 확충]** 금융기관은 유사시 **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으며**, 이 경우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에 비해 금융기관의 **유동성비율 제고에 도움***

* 대출실행시 시장성증권 담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LCR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대출채권 담보의 경우 LCR이 개선됨

- **[금융시장 불안 예방]**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 부족시 **시장성증권을 투매 (fire sale)**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**금융시장 불안을 예방**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IV 향후 계획

- 금년 말까지 금융기관과의 IT시스템 테스트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**내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**
 - 향후 **대출채권 관리방안의 정교화, 모의훈련 지속** 등을 통해 **대출채권 활용을 통한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개선**해 나갈 계획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」 제정 내용

I 제정 필요성

- 한국은행은 유사시 은행에 대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「한국은행법」 제28조제4호 및 제65조에 따라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II 주요 내용

- **(금융기관의 의무)** 긴급여신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제규정, 긴급여신 실행에 필요한 자료제출, 공동검사 수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(제2조)
- **(긴급여신의 기본적 사항)** 긴급여신의 대상기관, 대출한도, 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 기본적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결정(제3조)
- **(대상 대출채권)** 대출채권의 종류는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(주택 담보대출 제외)과 신용대출이며,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(BBB-등급 이상 이거나 한국은행이 이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)한 대출채권으로 한정(제4조)
- **(위험관리)** 총재는 긴급여신의 대출채권 담보 취득과 관련한 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(제5조)
- **(대출채권 담보의 심사)** 긴급여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대출채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,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심사(제6조)
- **(대출채권 담보의 제공 및 취득)**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,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, 부동산대출채권의 경우 부기등기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(제7조)

- 한국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항요건을 완전히 갖춘 대출 채권을 담보로 취득
- **(자료제출요구)** 한국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·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(제8조)
- **(모의훈련)**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여신 관련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(제9조)
- **(제재)** 관련 규정 위반 시 긴급여신 제한, 거절 등의 제재조치 권한을 명시(제10조)
- **(금통위 보고)** 총재는 긴급여신 운용실적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(제11조)
- **(위임)**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재 세칙으로 위임(제12조)

Ⅲ 시행일

- 2026년 1월 2일